

상담연구소 운영 규정

제정 2015. 4. 1

개정 2026. 9. 1

제1조(명칭과 소재지) 본 연구소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설 상담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하고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내에 둔다.

제2조(설립목적) 연구소는 상담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사람들의 당면한 문제해결과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과 교육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학술세미나 개최, 학술지 발간 등의 학술활동을 수행하며, 상담에 관한 책자를 출판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발전과 베뢰아운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상담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한다. 아동, 청소년, 부부, 중년, 노인, 다문화상담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한다.
2. 상담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3.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전문상담이 필요한 곳에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4.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한다.
5. “베뢰아상담학회”를 창립하여 학술대회를 열고, 상담전문인 양성을 위한 자격증제도를 마련한다.
6. 본교 상담학과 개설과 상담소 설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제4조(소장)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

제5조(연구원등) 연구소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본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된 자로,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학회의 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한다. 연구위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소장이 임명한다. 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

2. 연구원: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구분한다. 단,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연구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원의 임용(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

1.)

3. (삭 제) (개정 2026. 9. 1.)

4. (삭 제) (개정 2026. 9. 1.)

5. (삭 제) (개정 2026. 9. 1.)

제6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을 두고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보직자(처장), 연구소장, 정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담당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 규정의 수개정 심의,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 예결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
4. 기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의 연구지원금, 연구용역수입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현금출납)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교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계획)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사업실적)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당해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세칙 등)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교의 규칙을 따르되,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